

# 대부보증 표준약관



공정거래위원회

표준약관 제10061호  
(2014. 9. 19. 개정)

대부업자는 채무자·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- ★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★ 특히,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“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”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.(별지 “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”참조)

2019 년 5 월 일

대부업자 성명 또는 상호 (주)리딩플러스대부

대부업 등록번호 2018-금감원-1362(P2P연계대부업)

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, 6층  
(여의도동, 기계산업진흥회)

전화번호 02-6952-3682

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 
생년월일(성별)  
주 소  
전화번호

보증인(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채무자가 (주)리딩플러스대부(이하 “대부업자”라 한다)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(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),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

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.

제1조(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)

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.

채 무 자	성 명 : 주 소 :
거 래 약 정	2019년 5월 일자 약정서
채 무 금 액	금 삼천칠백만원 원 (삼천칠백만원 37,000,000)
상 환 기 일	2019년 10월 일
이 자 율	연 11 %
지 연 배 상 금	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(24)%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.

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.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.

보증기간	2019년 5월 일부터 2019년 10월 일까지
피보증채무금액	금 삼천칠백만원 원 (삼천칠백만원 37,000,000)
보증의범위 (보증채무최고금액)	금 삼천팔백만원 원 (삼천팔백만원 38,100,000)
연체이자율	24 %
특약사항	

제2조(계약서의 교부) ①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,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서 및